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80
----------	------

2016년 9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조웅 의원 외 9명

나. 발 의 일 : 2016년 8월 18일

다. 회 부 일 : 2016년 8월 22일

라. 상 정 일 :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조웅 의원)

가. 제안 이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16.1.15)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3조 제2항).
- 2)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함
(안 제3조 제2항 제5호).
-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
(안 제3조 제3항).
- 4)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16.1.15)됨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바, 법령 및 조례와의 체계성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등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¹⁾.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²⁾,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 위원 구성의 개정(안 제3조 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상위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가 개정³⁾되었는바, 하위 법령인 조례·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u>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u>	② <u>계약심의위원회의</u> ----- ----- ----- ----- <u>임명하거나 위촉</u> <u>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u>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u>공무원으로서</u>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u>있는</u> 사람	6. ----- <u>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u> ----- ----- <u>풍부한</u> -----
<신 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시의 재무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 ----- -----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 <삭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5.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 ----- 풍부한 자
<신설>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다.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 제3항)

- 안 제3조제3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제4항을 근거로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부합하는 한편,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4)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2.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의 임기 장기화는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있으나, 위원 고착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제약 및 우수 인력의 참여기회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제3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라. 위원의 해촉 사유의 변경(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해촉사유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계약심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다만, 제11조 제3호(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시 향후 제15조(운영세칙)에 따른 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한 적절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부칙(부칙 제1~3조)

○ 부칙)에는 시행일(제1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적용례(제3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법규가 제·개정·폐지되는 경우 그 법규에 의한 법질서의 혼란을 예방하는데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5)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 각 호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조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0
----------	------

발의연월일 : 2016년 8월 18일
발 의 자 : 최조웅 의원(1명)
찬 성 자 : 강구덕, 김경자(강서), 김인제,
김광수(노원), 김제리, 박중화,
주찬식, 진두생, 한명희 의원
(9명)

1. 제안이유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16.1.15)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 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함(안 제3조 제2항 제5호).
- 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안 제3조 제3항).
- 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함(안 제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의 재무관이 되고,”를 삭제하고,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로 하고, “있는”을 “풍부한”으로 하여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 각 호 개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 구성)</p> <p>② <u>위원장은 시의 재무관이 되고, 위원</u> <u>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u> <u>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u></p> <p>1. ~ 4. (생략)</p> <p>5. <u>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u> <u>받아 설립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u> <u>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u></p> <p>6. <u>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u> <u>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u> <u>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u></p> <p><신 설></p>	<p>제3조(위원회 구성)</p> <p>② <u>위원은 -----</u> <u>-----</u> <u>-----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u> <u>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5. ----- 공 <u>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u> <u>-----</u> <u>----- 풍부한 자</u></p> <p>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시의 <u>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u></p>
<p>③ <u>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u> <u>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u>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u> <u>기로 한다.</u></p>	<p>③ <u>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u> <u>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는 2회로 제</u> <u>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u> <u>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11조(위원의 해촉)</p> <p>1. <u>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u> <u>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u> <u>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p>	<p>제11조(위원의 해촉)</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u> <u>없게 된 경우</u></p>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 각 호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③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의원 최조웅